

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

나는 가장이다

- 대출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, **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**

(단, 신용 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)

- 대출금리 : 무이자
- 대출용도 : 임차보증금
- 대출조건 :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

예시 ① 기준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
: 750만원 - 500만원 = 250만원 (\Rightarrow 대출 가능금액 : 250만원)

② 기준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

: 800만원 - 200만원 = 600만원 (\Rightarrow 대출 가능금액 500만원 / 본인 부담금액 100만원)

③ 임대주택 : 보증금 5,000만원(본인 부담금 250만원)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,000만원(본인 부담금 400만원)으로
상향된 경우

: 400만원 - 250만원 = 150만원 (\Rightarrow 대출 가능금액 : 150만원)

- 상환 방법 및 금액 : 거치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

▶ 30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5만원 분할 상환

▶ 300만원 초과 ~ 35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6만원 분할 상환

▶ 350만원 초과 ~ 40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7만원 분할 상환

▶ 400만원 초과 ~ 45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8만원 분할 상환

▶ 450만원 초과 ~ 500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9만원 분할 상환

※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,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

-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
① 만 18세 (취학 시 만 22세)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② 임차보증금 보유기준

- 수도권 9,000만원

- 광역시 7,000만원

- 그 밖의 지역 6,000만원

※ 수도권 : 서울, 경기, 인천

〈2019년 기준 중위소득 100%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〉

(단위 : 원)

가구원 수	소득 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총 합
2인	2,907,000	94,808	75,719	95,962
3인	3,760,000	121,528	115,254	122,961
4인	4,614,000	150,844	151,910	152,850

※ 가구원수 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
만 18세 이하 : 2001.1.1. 이후 출생자 (취학자녀 : 1997.1.1. 이후 출생자)

※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

-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

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
②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(민법상 대출 불가)

③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④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
⑤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금을 무상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⑥ 신용관리 대상자 (개인회생, 파산)

* 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
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 상환중인 자
(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)

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

구분		2019년 일정		
		1차	2차	3차
대출 조건	신규/재계약 기한	2019년 1월 1일 ~ 6월 20일	2019년 4월 1일 ~ 8월 20일	2019년 7월 1일 ~ 11월 20일
	잔금자급일	2019년 1월 1일 ~ 7월 31일	2019년 4월 1일 ~ 10월 31일	2019년 7월 1일 ~ 2020년 1월 31일
신청서류 접수		4월 1일(월) ~ 4월 19일(금)	6월 10일(월) ~ 6월 28일(금)	8월 19일(월) ~ 9월 6일(금)
최종심사대상자 발표		5월 22일(수)	7월 26일(금)	10월 11일(금)
약정서류 접수		일정 및 내용은 최종심사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신청기관을 통해 공지 예정 (※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 후,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함)		
대출금 입금		6월중	8월중	11월중

※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변경될 시 홈페이지에 공지)

- 접수방법 :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 – 신청서 및 구비서류(원본)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제출
- 접수처 : (08302)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, 2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
- 제출서류

접수

방법

제출
서류

구분	구비서류			비고	
신청 기관	• 서식1. 신청기관 총괄표(엑셀)			홈페이지 다운로드	
	• 서식2. 신청기관 신청서(한글)				
	• 서식4. 사실확인서 (해당의 경우)				
필수 서류	• 서식3. 대상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		홈페이지 다운로드	
	• 서식5. 상환계획서				
	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				
신청자	•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– 시설거주자 : 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– 무상거주 : 서식4.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 – 신규 또는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출신청시 : 신·구 계약서 사본 각1부			주민센터, 인터넷	
	소득증빙서류 (해당분야 제출)	기준 중위소득 50%이하	•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		
		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52%이하	•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		
		기준 중위소득 52%초과 ~100%이하	• (2019년)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	국민건강보험공단	
해당자	★ 심사평가시 가점부여	• 청약저축 확인서(전체 납입회차 확인)1부		거래은행	
		• 장애인증명서 1부			
	신용회복 대상자	•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•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		주민센터, 인터넷	

※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(www.seoulhanbum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
● 유의사항

-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-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(접수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)


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 T. 02-861-3011

문의

- *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